

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제안설명서

1. 제안사유

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중 3~5인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 (신설 안 제3조의 2)
- 위원회 의사는 2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개정함. (안 제6조 제4항)